

# 불법 유통되는 중고수입복사기에 대한 대책 논의

## 지식경제부 주관, 복사기 업계 간담회 열려

실물경기 침체 등으로 국내 경제가 악화됨에 따라 지식경제부 주최로 광학기기 업종별 현황 파악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을 위한 복사기 업계 간담회가 지난 4월 28일 지식경제부의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광학기기협회와 회원사인 삼성전자, 신도리코, 한국후지제록스,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등 국내 주요 복사기 관련 업체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는 국내 시장에서 많은 부작용을 놓고 있는 불법 중고수입복사기의 유통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고갔다.

정리 | 편집부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는 복사기 업체들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국내 유통되는 불법 중고 복사기 수입과 관련한 문제가 최대 현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28일 지식경제부 주최로 열린 복사기 업계 간담회에는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주요 복사기 업계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국내 복사기 업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정부 관계자에게 건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지식경제부 기계항공시스템과의 이재홍 과장, 이춘희 사무관, 이승수 주무관, KOTRA 외국기업 고충처리팀의 김승진 전문위원, 한국광학기기협회의 이탁희 부회장과 박홍재 차장을 비롯하여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김남진 차장, 신도리코의 반차식 차장, 캐논코리아 비즈니스솔루션의 인육환 영업본부장과 이건희 대리, 한국후지제록스의 황인태 전무와 최재봉 팀장, 태홍아이에스의 엄석용 부장 등 총 13명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눴다.

이날 업계 실무자들은 한결같이 중고 복사기 수입과 관련한 부작용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해 언급하고 정부의 관심과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한국후지제록스의 최재봉 팀장은 “그동안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대책마련 및 법률개정을 통해 복사기 업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

울였으나 일부 시행오류와 관련기관들의 관심부족으로 오히려 불법 수입 중고복사기 시장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특히 법률상 요구되는 안전검사 불이행(통관 후 30일 이내 신청), 사후관리 미흡, 단속기관 및 상위기관의 관심부족 등으로 복사기 업체들은 현재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복사기 시장은 연 판매대수가 8만5천여 대로 성장이 둔화됐고 최근 몇 년간 이 수치가 지속되면서 시장 정체기를 맞고 있다. 그런 가운데 복사기 전체 시장에서 30% 가량 차지하고 있는 중고 수입 복사기는 환경과 서비스 등 분야에서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수입의 70% 이상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되어 건전한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어 복사기 업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관련법의 혁신과 사후관리의 부실로 이미 특정지역에서는 중고복사기가 전체 유통량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확대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의 인육환 영업본부장은 “중고 수입복사기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불법 수입 복사기로 인해 복사기 제조업체들은 신제품 매출 감소로 인한 신규 연구개발 및 투자의욕 감소와 함께 외투기업의 철수 및 공장의 해외 이전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더

표 1. 국내 복사기 산업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 불)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예상)
수출입	수출	310	325	322	206
	수입	120	103	118	89
	무역수지	190	222	204	117

\*자료: 복사기 주요 3사의 실적 기준, 무역협회 MTI 참조

표 2. 현행 복사기 불법업자 처벌 규정

구분	조항	세부내역	비고
관련법규	제7조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 판매, 대여업자는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판매, 대여하거나 판매, 대여의 목적으로 수입, 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안된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안전검사 대상	제14조	전기용품을 수입할 때마다 해당 수입중고전기용품의 통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모델별로 안전인증대상 수입중고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서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규칙
벌칙	제25조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 대여하거나 판매, 대여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또는 보관하는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심각한 문제는 수천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와 더불어 고용불안이 심화되는 등 상당한 애로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복사기를 세관장 확인품목으로 추가하여 불법 복사기의 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복사기 전체 30% 차지하는 중고복사기, 환경과 서비스 등 각종 문제 야기

복사기 전체 시장에서 30% 가량 차지하고 있는 중고수입 복사기는 환경과 서비스 등 분야에서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1999년까지만 하더라도 복사기를 포함한 사무용 전기제품이 세관장 확인품목대상이었다. 문제는 그해 10월부터 복사기 등 사무용 전기제품이 세관장 확인품목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해외에서 폐기 처분된 중고 복사기가 무분별하게 수입되기 시작한 것. 정부의 재활용 육성정책은 바람직하지만 국내 광학기기 사용연한이 외국에 비해 길고 환경에 대한 규제가 미약한데다 관리가 취약하여 수입 중고제품이 국내에 크게 반입되고 있다. 무엇보다 타국에

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상황이라 폐기물 처리 비용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재활용 주체인 중고 수입업체가 거의 영세기업이어서 소모품 수거 등 환경 문제에도 소극적이고, 중고 물품의 난립으로 신제품 시장의 점진적 쇠퇴를 가져오는 시장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현재 안전검사는 한국전자파연구소,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3개 기관에서 맡고 있고,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에서 불법유통 통제를 맡고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수입 통관 시 30일 이내 모델별 안전검사를 신청해야 하고 이는 45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초기 대응이 문제다. 세관 협조를 얻어 3개 인증기관 및 전기제품안전협회에서는 수입중고기 통관 일자 및 수량을 파악해야 하는데 실제 이들 기관에서 중고기 수입현황 파악이 어려워 단속에 애로점이 있다. 이를 이용하여 수입업체는 수입 통관 시 안전검사를 신청하고 검사완료 전 해당 중고 수입기를 시장에 유통시키는 것이다.

한국후지제록스의 최재봉 팀장은 “중고수입복사기의 50%만 안전검사를 신청하고 나머지는 불법으로 시장에

## ■■ 불법 유통되는 중고수입복사기에 대한 대책 논의



▶자식경제부 주관, 복사기업종 간담회에 앞서 지난 4월 21일 주요 복사기 업체 실무자들이 한국광학기기협회에 모여 협의회를 가졌다.

유통해도 해당 검사기관 및 전기제품안전협회에서는 불법사항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세관장 확인품목으로 재지정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 중고복사기의 수입통관을 원칙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수입시 안전검사 후 해당 수입품에 안전 필증을 부착후 판매해야 되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를 통한 연중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함께 불법업자 처벌 강화 및 불법 복사기 파기확인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 복사기 업계, 복사기의 세관장 확인품목으로의 추가 문제 정부 건의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지식경제부 기계항공시스템과의 이재홍 과장은 업계의 애로점을 청취한 뒤 “정부 규제 완화는 상당히 좋은 취지에서 이뤄지지만 그에 따른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현재 중고복사기 수입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한 것이 사실이다”며 “업계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중고복사기 수입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공유와 더불어 수입통관 후 안전검사필증을 부착하고 판매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로 인해 복사기 업계의 애로사항들이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규제강화 보다 현재의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복사기 불법 유통업체를 검거, 구속 입건 처리한 사건이 있었다. 검거된 유통업자는 대규모 창고를 만들어 전기안전검사인증서를 위조 부착한 복사기를 유통시킨 혐의로 구속됐다. 이 업체가 유통한 복사기는 약 2000대, 25억 원 규모였다. 이 같은 ‘블랙마켓’의 성장은 앞서 소개한 것과 같이 복사기 시장 자체를 위협하며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이것은 소비자들의 안전과도 관련 있어 심각하다. 안전 인증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기적 위험·화재 위험이 크며,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기 어렵다. 주로 폐기 제품을 부품만 교환해 판매하기 때문에 잦은 고장에 시달릴 수 있지만 AS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소비자 쪽에서는 인지할 필요가 있다.